

## 【 주간 이슈 】

**법률비용보험의 특성과 운영체제 구축방향**

이창우 부연구위원

-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법률서비스를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실화 책임법 위헌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사고 위헌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법률비용보험은 종합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공급되었으나 향후에는 전문화된 단독 보험상품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법률비용보험의 담보위험은 신용상품의 일종으로써 서비스공급자와 이용자의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음.
  - 신용상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양을 추천하는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상품이 해당됨.
  - 이러한 신용상품은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양을 결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필요하였는지 혹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한 상품의 양과 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신용상품서비스를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은 신용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측면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법률비용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인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과잉서비스 제공 등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체제 구축이 필요
  - 신용상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혹은 필요하지만 이윤이 적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비용보험은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공급자한정 법률비용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금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본고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서론

-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는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관련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임<sup>1)</sup>.**
  - 최초의 법률비용보험은 1917년에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DAS라는 상호회사가 설립되어 처음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럽 등에서는 독립적인 보험상품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이에 비해 국내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에서 특약의 일종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왔음.
  
- **최근 실화책임법 위헌판결<sup>2)</sup>,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사고에 대한 위헌 판결<sup>3)</sup> 등으로 법률비용이 경제주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국가처럼 독립적인 상품개발이 되고 있고 전문보험회사가 진출하고 있음.**
  - 2009년 10월 LIG손해보험은 국내최초로 법률비용보험상품을 도입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동년 12월 독일DAS법률비용보험(주)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공제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급여자인 공급자가 각각 달라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발생이 가능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마련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향후 법률비용보험이 건전하게 기능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보위험이 신용상품(Credence Goods)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련해야 함.**
  - 법률비용보험의 실질적인 급여자인 서비스제공자의 과잉서비스 등과 같은 기만적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에 노출될

1)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 2004  
 2)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도록 한 ‘실화책임법’의 헌법 불합치 및 적용 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판결배경은 “단순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고,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 시킴이 상당하다” 라고 본 것이다(김성섭, “실수로 불내도 손해배상 책임”, 『뉴스시스와이어』, 2010.04.30)  
 3) 기승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KiRi Weekly』 제20호, 2009.3.9

가능성이 큰 특성이 있으므로 유형의 피보험이익을 담보하는 재물보험과 다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신용상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의 법률비용보험 운영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함.

## 2. 신용상품의 개념과 특징

□ 신용상품(Credence Goods)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사후적으로 품질을 확신할 수 없는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음<sup>4)</sup>.

-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가 진단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양을 추천하는 대부분의 전문가 서비스 상품이 신용상품의 범주에 속함.
- 신용상품은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양을 결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행해진 서비스가 필요하였는지 혹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신용상품의 특징으로 인하여 신용상품 공급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

- 신용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급자가 상품 공급시 수요자를 기만할 인센티브가 존재함<sup>5)</sup>.
- 신용상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혹은 필요하지만 이윤이 적은 서비스는 제공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신용상품 수요자는 신용상품 공급자의 정직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적합한 상품선택에 한계가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신용상품 수요자 또한 신용상품 공급자를 탐색할 유인이 많이 존재함.

- 신용상품 공급자의 정직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용상품 수요자가 충분한 탐색을 하게 할 유인을 제공함.
- 따라서 탐색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신용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 올 수 있음.

4) Darby, M.R. and Karni, E. "Free Competition and the Optimal Amount of Fraud."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6, 1973

5) Emons, Winand. "Credence Goods and Fraudulent Expert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28(1), 1997

- 예를 들어 처음 탐색에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두 번째 탐색을 하는 신용상품 수요자는 두 번째 탐색에서 높은 가격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신용상품 공급이 수직적으로 차별화 될 가능성이 높음<sup>6)</sup>.

- 신용상품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유인과 신용상품 수요자의 탐색 유인, 그리고 신용상품 공급자의 평판의 중요성으로 인해 시장의 균형은 신용상품 공급의 수직적 차별화로 수렴할 가능성이 많음.

### 3. 신용상품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특징

□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달리 신용상품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고려하여 두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용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존재하지만 보험회사는 신용상품을 공급하는 주체와 공급가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신용상품 공급자와 신용상품 수요자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일반적인 보험에서 야기되는 보험수요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존재함.
- 신용상품 공급자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윤이 높은 서비스를 과잉공급하거나 이윤이 낮은 서비스는 과소공급 할 유인이 발생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신용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와 어떻게 계약하는가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음.
- 신용상품 공급자와의 계약이 불가피하므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정한지에 대한 보험심사의 중요성이 높음.
- 보험 수요자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나 제 3자(신용상품 공급자)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상품 공급자에 대한 리스크평가가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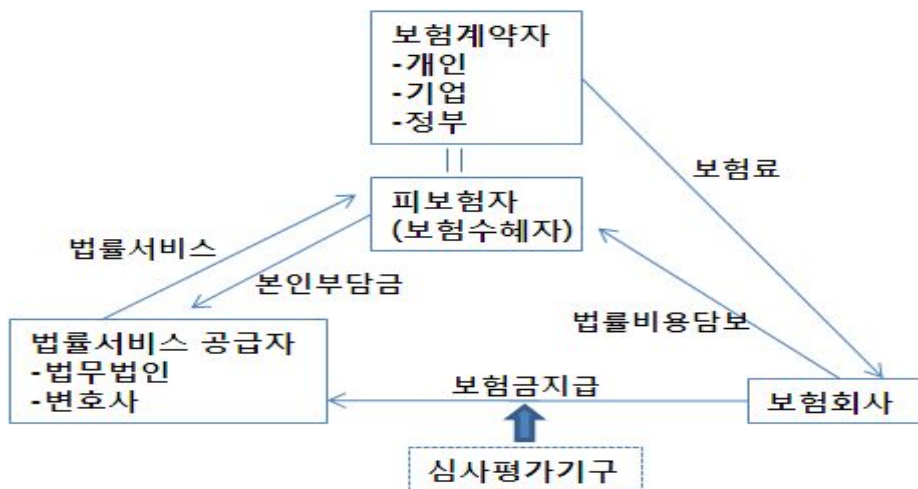
6) Wolinsky, Asher. "Competition in a market for informed experts' service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24(3), 1993

- 보험회사는 신용상품 수요자에게는 탐색의 기회를 줄이고 신용상품 공급자에게는 정직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신용상품의 보험계약으로 형성된 가격이 신용상품시장에서 하나의 균형가격이 될 수 있음<sup>7)</sup>.

#### 4. 법률비용보험의 운영체계 구축방향

- 법률비용보험이 신용상품의 일종인 법률서비스 비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신용상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법률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체계가 필요함.
- 법률비용보험은 3명의 주체 즉,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그리고 법률서비스 공급자로 이루어짐.

<그림 1> 법률비용보험 운영체계 개념도



- 법률비용보험은 민영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와 함께 신용상품 공급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여기서 언급한 민영건강보험은 미국식의 완전한 형태의 민영건강보험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보완적 형태의 민영건강보험을 뜻하지 않음.

7) Sulzle, K and Wambach, A. "Insurance in a Market for Credence Good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2(1), 2005

- 참고로 보완적 형태의 민영건강보험은 보험회사와 신용상품 공급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공급자의 기만행위를 제어할 수 없음.
  - 법률비용보험의 형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 형태를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유사할 수 있음.
-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기만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자를 한정하여 보험회사가 법률서비스 공급자와 개별 계약을 할 수 있음.
- 강제적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법률비용보험은 민영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므로 보험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자를 한정해야 함.
  - 보험회사의 소규모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요 독점적 지위로 보험계약자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음.
  -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평판이나 승소율에 따라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차등화와 시장의 분리가 가능함.
    - 신용상품의 특징에서 언급하였듯이 법률서비스 시장은 이미 수직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따라 보험 상품의 차별화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위해 보험심사 기능의 강화가 중요함.
- 보험사고 발생시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법률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보험심사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격에 대한 심사평가가 중요함.
  - 법률서비스 공급자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급심사가 강화 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험심사기능 강화방안으로 독일의 의무적 손해사정회사제도와 미국의 공급자와 보험회사가 통합된 기업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방안은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며 기존의 보험유관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

- 법률비용보험이 강제보험이 아니라는 점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평가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제도적으로 평가기관에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안의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심사평가기관의 대안으로 독일에서 운영 중인 법률비용보험 손해사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보험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법률비용보험의 손해사정 업무처리를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 가능한 손해사정회사는 법률비용보험 이외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손해사정회사의 대표는 법률비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종사할 수 없음.
  - 손해사정회사가 민간의 심사평가기능을 가지는 방법으로 손해사정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임.
- 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자와 보험회사의 통합형태 또한 가능함.
  - 미국에서는 법률비용보험의 운영을 법률서비스 공급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보험 심사를 내부화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기만행위를 제어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법률서비스 공급자간의 문제를 내부화시켜 시장경쟁압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임.
  - 법률서비스 공급시장의 기반이 확대될 경우 고려될 수 있는 방안임.

## 5. 결론

- 법률비용보험은 신용상품의 일종인 법률서비스를 담보하기 때문에 신용상품의 운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함.
  - 법률비용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에 있어서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급부자인 공급자의 과잉서비스 등 기만행위 유발 가능성,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발생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측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법률비용보험의 계약주체별 이해관계 차이로 나타나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보험금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법률비용보험의 건전성과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기만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금 심사기능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와 공급자를 한정하는 보험상품 개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실화책임법 위헌 등과 같이 경제주체들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법 적용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법률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로 보험시장확대가 가능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측면에서는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해지며,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서비스시장의 확대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KiRi